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416
----------	-------

발의연월일 : 2025. 12. 19.

발의자 : 전현희 · 김한규 · 홍기원

장경태 · 민병덕 · 이건태

이성윤 · 서미화 · 김영환

윤종군 · 염태영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교사와 공무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또한, ILO 151호 협약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는 한편, 국민주권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도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하는 것을 규정하였음.

이에 교사와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사 ·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유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65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거에서 특정”을 “선거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에”를 “제2항에”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삭>
② 공무원은 <u>선거에서 특정</u>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u>선거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u>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u>제1항과 제2항에</u>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u>제2항에-----</u>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